
2015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례 해설

201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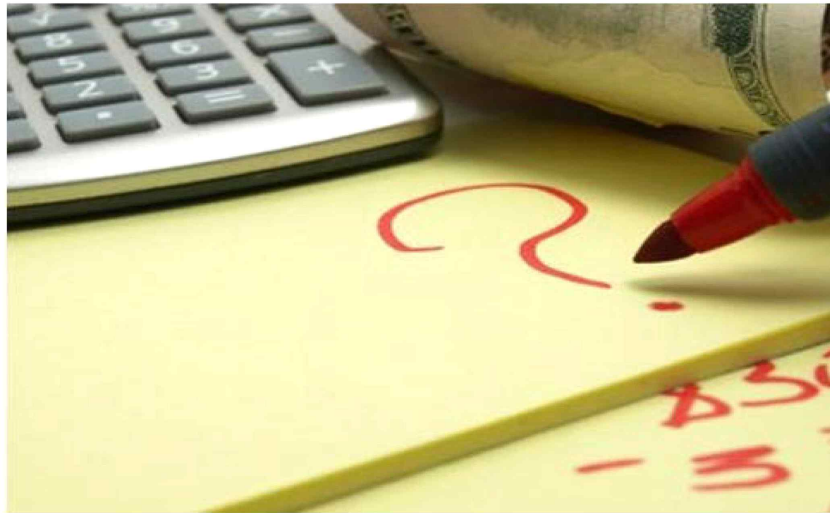
기 획 재 정 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례 해설

2016회계연도 중간점검 2015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례 해설

2016. 09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감사원 연례 지적사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49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47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45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40
대손설정시 합리적인 추정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0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2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25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22
프로그램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20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20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과소(과대)계상	2	5	4	5	2	18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다계상 오류	5	5	2	4	2	18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7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5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15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Q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13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12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1	1	2	4	3	11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2	-	2	1	8
공공기관 위탁자산 미반영으로 인한 오류	-	-	5	1	1	7
합계	92	85	89	98	94	458

■ 선정 기준:
과거 회계연도에 반복적
으로 지적된 사항

■ 연례적 지적사례가 전체
감사원 지적사항(625건
의 약 70% 이상을 차지

■ 연례적 지적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19	2	3	3	22	49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회 일반회계에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업무포탈 사이트 구축에 지급된 용역비를 연구개발용역비로 비용 처리한 결과,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 211,357,667원 과소계상, 연구개발용역비 214,940,000원 과대계상, 무형자산상각비 3,582,333원 과소계상 되었다.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19	2	3	3	22	49

➢ 발생원인 :

1. 무체재산 취득 관련 비용 지출 시 용역명세 선택 오류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지출비용

The screenshot shows a window titled '용역명세' (Service Details). It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구분' (Category), '목/세목' (Item/Detail), '계정과목' (Account Item), '내용' (Content), and '수량' (Quantity). A dropdown menu is open over the '비용' (Cost) column, showing options: '무체재산' (Intangible Asset), '선택항목' (Optional Item), '[건종자산]' (Construction Asset), '비용' (Cost), and '물품' (Goods). The '무체재산' option is highlighted. To the right of the dropdown are buttons for '추가' (Add), '삭제' (Delete), and '상세' (Details). Below the table is a '요청연번' (Request No.) field and a '닫기' (Close) button.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비용항목 분개장 검토 및 추세분석: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분개장 적요 확인 등을 통해 자산성 검토

월별 증가내역 검토 후 비정상적인 월의 세부내역 확인

-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비용항목 단위사업 비교

구분	재무결산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한 단위사업 발견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비용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체자산 등재 필요성 검토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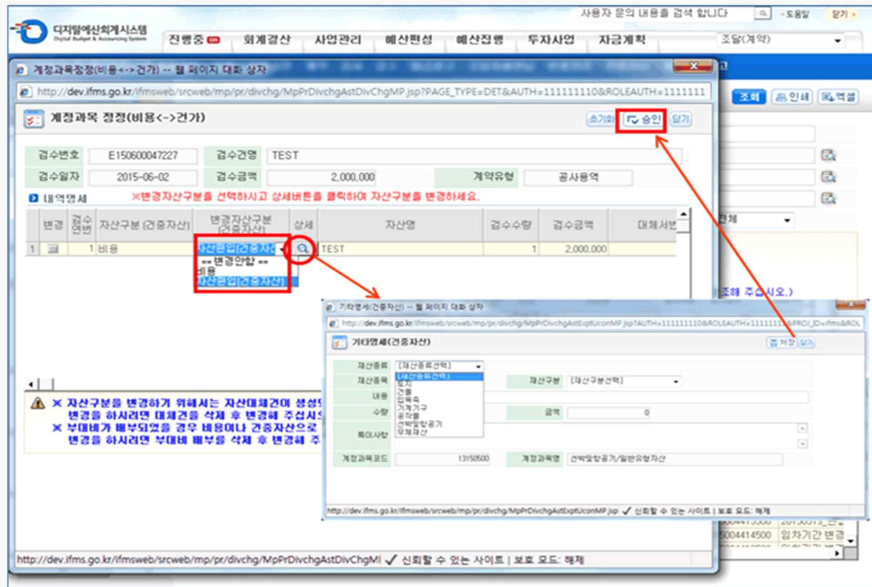
-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무체자산 등재 필요성 여부 추가 검토

- 오류 발견 시 계정과목 정정 &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구분	회계처리 예시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선급금	100	연구개발비	100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소프트웨어	100	선급금	100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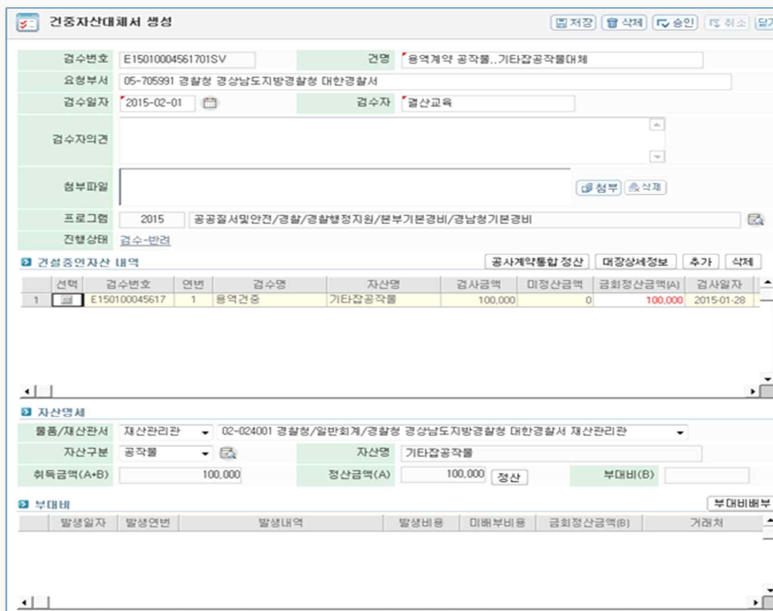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7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8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4	11	12	10	40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청 일반회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경기도 수원시 등에 있는 13건(79,325㎡)의 토지를 재평가하지 않아 토지(일반유형자산)가 110억 5,221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4	11	12	10	40

▶ 발생원인 :

1. 가격평가대상자산 생성 시 재평가 대상 자산을 누락
 - 국유재산담당자가 재평가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류 발생
2. 공정가액 입력 오류
 - 실제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대장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오류 발생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유재산 결산지침)
- 결산시점에 dBrain 국유재산 게시판에 가격평가 대상자산 공시
또한 **가격평가대상조회** 메뉴를 통해 대상자산 확인 가능
- **가격평가대상조회**를 통해 실제 재평가내역을 확인(국유재산CFO권한)
- 결산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재계산을 수행한 후 재평가 결과와 비교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국유재산 게시판_(15년 결산) 2015년 가격평가 시행 안내

상세 문서명	파일명	첨부	다운로드
[미뉴얼]국유재산_가격평가_V1.2.ppt	[미뉴얼]국유재산_가격평가_V1.2.ppt	☑	다운로드
[20160215_가격평가대상_안내.xls]	20160216_가격평가대상_안내.xls	☑	다운로드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가격평가대상조회

가격평가대상조회

회계연도: 2014년

대상구분: 국토부공시지가 반영 대상가액과 ±30%차이

자산번호	자산명	소재지	재산종류	재산종목	취득일자	면적	대장금액	국토부공시지가	결산비용공시지가	면적*공시지가
1	12104763A1 양구생약지원/강원도 양구군 토지	일반토지	2001-06-27	9,970.00	34,895,000	409,000	400,000	4,077,730,000		
2	12104763A1 양구생약지원/강원도 양구군 토지	일반토지	2001-06-26	4,126.00	14,441,000	409,000	400,000	1,687,534,000		
3	12104763A1 양구생약지원/강원도 양구군 토지	일반토지	2001-06-27	10,003.00	35,010,500	409,000	400,000	4,091,227,000		
4	12104763A1 육천국가생약/충청북도 육천 토지	일반토지	1998-06-25	7,241.00	39,318,630	64,000	100,000	463,424,000		

* 가격평가대상을 확인하는 참고 사항
 마감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대상, 마감을 생성한 경우는 마감자료를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
 국토부공시지가 반영 대상가액과 ±30%차이 (토지)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시지가 적용 시, 대장가액과 ±30%차이(차이금액 1억원 초과)인 토지 확인

13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가격평가대상조회

가격평가대상조회

회계연도: 2012년

대상구분: 국토부공시지가 반영 대상가액과 ±30%차이

자산번호	자산명	소재지(지번)	소재지(도로명)	재산종류	재산종목
1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가격평가대상토지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양도	
2	02154201 대검찰청 서울고등(02154201A) 평가대상토지1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3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A) 자산평가대상토지6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4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A) 자산평가대상토지2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5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A) 자산평가대상토지3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6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A) 자산평가대상토지4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7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A) 자산평가대상토지5	서울특별시 용문구	토지	일반토지	
8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자산평가대상토지1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양도	
9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자산평가대상토지2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양도	
10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자산평가대상토지3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양도	
11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자산평가대상토지4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주역	
12	02140701 대검찰청 사무국 관(02140701B) 자산평가대상토지5	서울특별시 용문구	건물	주역	

14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 토지재평가 미 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 결산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재평가 결과와 가격평가대장의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경우 추가 검토 수행

구분	1단계	2단계
공시지가 기준 30% 초과 차이 가격평가대상상 재평가 미수행	재평가 미수행 사유 파악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문서화 단순 누락일 경우 재평가 수행 요청
공시지가 기준 30%이하 차이 가격평가대상상 재평가 수행	재평가 수행 사유 파악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문서화 합리적 사유가 없을 경우 재평가 취소 요청

- 재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평가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아닌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유에 대한 검토
- 국유재산 마감 전에 국유재산 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

1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 단일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2	4	7	8	9	30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계상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금을 산정하면서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29억 8,521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1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 단일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2	4	7	8	9	30

발생원인 :

-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 산출근거 미비
 -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직전년도의 대손율을 그대로 적용
- 계정과목 단위로 대손설정방법 및 대손율 입력
 - 개별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대손율 적용

3. 단일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The screenshot shows a financial statement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data tables:

차번	잔액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대면	
	잔액	합계			합계	잔액
1	332,032,231,378,611	2,342,251,331,130,113		합 계	2,342,251,331,130,113	332,032,231,378,611
33	7,511,794,584	170,692,589,651	11040801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163,180,795,067	
34	10,826,866,643	247,980,219,232	11040802	미수채권이자수익	237,153,352,589	
35	448,165,994,824	14,568,330,420,521	11040803	미수대여금이자수익	14,120,164,425,697	
36	645,764,968,190	800,218,031,879	11040804	미수기타이자수익	154,453,063,699	
37	1,294,750,230	7,517,163,858,570	11040900	미수기타수익	7,515,875,108,290	
38	423,724,598,991	2,218,988,773,973	11041000	기타의미수금	1,795,264,174,982	
39	0	8,405,611,390	1106000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81,016,171,720	72,101,000,000
40	0	8,405,611,390	11060100	미수국채대손충당금	18,589,154,712	10,100,000,000
41	0	0	11060300	미수제자금수익대손충당금	52,165,953,484	52,100,000,000
42	0	0	11060400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	6,065,275,058	6,000,000,000
43	0	0	11060900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	2,001,311	2,000,000,000
44	0	0	11061000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4,192,787,155	4,100,000,000

회계	계정과목	전기잔액	회계/기금 결산조정전		
			차변	대면	
1	110000일반회계	미수기타수익	86,546,180	1,844,022,162,420	1,843,908,577,420
2	235000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미수기타수익	0	5,548,843,000,000	5,548,843,000,000
3	150200국유재산관리기금	미수기타수익	0	13,377,972,680	12,370,089,350
4	154000공공자금관리기금	미수기타수익	2,102,240	110,838,075,050	110,753,441,520

3. 단일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문서화

- 대손추산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문서화(일관성 유지)
-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

2. 개별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금액인 큰 미수채권 등은 반드시 추가 검토
-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 등 활용
- 기존 대손설정금액 고려 필요

(예: 대손실적률법에 따라 5%를 설정한 경우, 나머지 95% 추가 설정)

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7	6	3	7	3	26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 일반회계에서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당기에 입금된 국유재산 사용료 금액 중 전기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까지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여 재화및용역제공수익(비배분수익)이 175억 7,179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기타재원이전(재원의조달및이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

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7	6	3	7	3	26

▶ 발생원인 :

1. 자차	조회시점	설명
- 대부	회계연도말(12.31)	회계연도말 시점을 기준으로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무결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
- 기말	결산시점(1월 중)	회계연도말~결산시점 중에 납입이 완료된 건이 미수납액 내역으로 조회되지 않음

2.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 이자발생자산 및 부채 보유, 매년 사업비 등을 정산하는 경우
- 미지급비용 등은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서만 재무결산에 반영 가능

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interface. The main window shows a '결산조정전표현황 조회' (Balance Sheet Adjustment Statement Status Search) screen. The search criteria include the fiscal year '2014' and the account type '일반회계' (General Accounting). The table below lists the adjustment entries with their respective amounts.

조정전표 번호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반영전 금액			조정 금액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차변 금액	
1	00025477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3,254,465,972.484	0	627,980,226.880	
2	00025477	21110701 미지급이자비용	0	746,735,046.755	0	
3	00025486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4,647,448,411.489	0	
4	00025486	11090600 선금입	3,912,979,990	1,390,176,870	83,322,500	
5	00025486	41071300 잡이익	0	1,474,930,980.332	0	
6	00025486	11090600 선금입	3,996,302,490	1,390,176,870	18,417,630	
7	00025487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3,882,446,199.364	0	3,970,305,865.680	
8	00025487	21110701 미지급이자비용	0	1,374,715,273.635	0	
9	00025489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7,852,752,065.044	0	18,101,346,944	
10	00025489	21110701 미지급이자비용	0	5,345,021,139.315	0	
11	00025490	13221400 연결중인기타의유형자산	63,652,960	5,253,990	206,397,860	
12	00025490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4,647,531,733.989	0	
13	00025491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7,870,853,411.988	0	1,723,102,288	
14	00025491	21110701 미지급이자비용	0	5,363,122,486.259	0	
15	00025492	13221400 연결중인기타의유형자산	270,050,820	5,253,990	0	
16	00025492	13221400 연결중인기타의유형자산	270,050,820	7,003,990	0	
17	00025492	51079000 기타수수료	665,539,387	0	6,077,390	
18	00025493	410717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14,647,738,131.849	-14	
19	00025493	513116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14,591,930,125.085	0	-14,418,281,104.563	

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조치>

재무결산담당자의 확인 결과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dBrain운영단에 공문을 통해 정보관리항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결산조정분개를 등록해야 한다.

<발생주의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 조치>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결산담당자가 관련 효과를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재무결산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이자발생자산 및 부채: 이자율, 만기 정보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근거법령 및 계산근거

2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5.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5	7	7	3	25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에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성 대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장기대여금(투자자산)이 300억원 만큼 과대 계상되고 단기대여금(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2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5.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5	7	7	3	25

➤ 발생원인 :

1. 정보관리 항목 입력 오류

- 유동성 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
- 정보관리 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자동 분개 생성

5.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합계잔액시산표, 분개전표 조회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의 전기 대비 증감 여부 확인
- 비유동성 항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대체를 통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비유동->유동->상환)
- 비유동성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일부 유동성 항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상환스케줄 고려)

5.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동성 대체 관련 자료 수령 및 재계산 수행
(융자금/리스 상환스케줄, 보증금 계약서 등)
 - dBrain상 산출된 유동성대체금액과 비교
 - 정보관리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 검토
2. 오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업무담당자를 통해 원장(정보관리항목)을 수정
 - 유동성 대체 업무를 재수행

☞ 금융상품, 대여금(융자금), 임차보증금, 선수수익, 차입금(금융리스부채) 등 특히, 임차보증금은 결산검사 시 계약서 검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	8	6	6	2	22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청 일반회계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정리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 자산 취득부대비용을 토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기타수수료로 처리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4억 235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기타수수료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	8	6	6	2	22

➤ 발생원인 :

1. 발생유형 선택 오류

- 부대비 지출 건에 대해 '0. 일반지출' 발생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2. 공사수리 요청 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 '증축'이 아닌 '개보수' 선택(공사계약을 통해 등재된 자산)
-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 선택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발생유형	차 변	대 변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기타수수료 50,000	현 금 50,000
1. 국유재산 부대비지출(계약 후/등재 전)	건설증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2. 물품 부대비지출(계약 후/등재 전)	건설증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3. 국유재산 부대비지출(등재 후)	자산(대장번호선택시) 50,000	현 금 50,000
4. 물품 부대비지출(등재 후)	자산(대장번호선택시) 50,000	현 금 50,000
5. 계약 전 부대비지출	건설증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구분	설명
자본적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수익적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TIP>

1.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부대비비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예: 토지보상비용, 이주단지 조성비용)
 - ②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예: 설계용역비)
 - ③ 자산을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보험료, 하역비, 매입수수료, 보험료
 - ④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2. 참고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3. 기계의 소모된 부품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31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한 추세분석(월별 증가내역 확인)

소모품비, 기타용역비,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

- 분개장 조회를 통해 비용항목 적정성 검토

적요 및 지출목(400년대 항목) 검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시설비(430-02)**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익적지출,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전표현황' (Voucher Status) screen. Key elements include:

- Header:** 2015.09.14 (월) 로그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 Navigation:** 전표현황, 사업관리, 예산편성, 예산집행, 자금계획, 수입, 지출, 회계결산
- Form Fields:** 회계년월 (2014년 02월), 회계 (21400), 계정과목 (51170101), 회계일자 (2014-02-27), 회계 (21401), 거래코드 (일반지출), 작성자 (김익희), 전표총금액 (3,570,000,000), 예산과목 (420-03 건설비/시설비), 견기여부 (견기완료)
- Table 1: 분개장 (Journal Entry)**

회계일자	회계	거래코드	거래일자	전표번호	전표유형	작성일자	발생업무구분	잔액
2014-02-27	21401	일반지출	2014-02-27	R2014020952140100005304	일반전표	2014-02-27	지출관리	3,570,000,000
- Table 2: 분개내역 (Journal Entry Details)**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1	51170101 건물수선유지비	선금(10회) 지출(전현-중평 2공 선금(10회) 지출(전현-중평 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3,570,000,000
2	61010000 국고수입/자원의조달	선금(10회) 지출(전현-중평 2공 선금(10회) 지출(전현-중평 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		0
- Table 3: 관리항목내역 (Management Item Details)**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항조값
1	거래처코드	100740434	한신물연(주)
2	거점분류코드	440	민간-기타민간단체
3	자산번호	기타	
4	자산명	기타	

33

6.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발생유형 선택 오류 조치 방안

- 발생유형 변경 후 부대비 배부
- 발생유형 변경: 자산의 구분 및 지출시점에 따라 다름
- 부대비 배부: 검사시점에 부대비 배부

검사시점 이후에는 '기타증가 | 취득후부대비배부'

2.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오류 수정 방법

- 공사계약: 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 자산대체서 생성 및 승인을 통해 장부가액에 가산
- 수리계약: 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34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6	7	2	3	2	20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처 일반회계에서 조직의 기능수행 및 행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운영성경비인 건강보험부담비를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명: 식품안전성제고)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순원가가 33억 4,179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관리운영비 항목인 건강보험부담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6	7	2	3	2	20

▶ 발생원인 :

1.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수행
 -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자동 원가 배분
2. 회계실체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 재배분 업무 누락
 - 시스템상 자동으로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기타비용, 평가이익, 기타수익 등)
3. 결산조정분개 항목(대손상각비 등) 관련 원가배분 업무 누락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재정운영표 조회를 통해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 중 비경상적인 항목(감가상각비 등)이 있는지 검토

비경상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①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 ② 회계실체의 성격상 주요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
- ③ 결산조정으로 입력한 항목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대손상각비 등)
- ④ 전기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계정과목이 당기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있는 경우

37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미등록자산], [종료폐지된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조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자산검정' (Asset Verification) screen in the accounting system. The left sidebar shows a tree view of accounts, with '자산' (Assets) expanded to '자산검정' (Asset Verification). The main area shows search criteria for '자산검정' with the following values: '사유' (Cause) set to '이동/사양이동' (Move/Specification Change), '연도' (Year) set to '2015', and '인계일자' (Transfer Date) set to '2014-10-09'. The '인계일자'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right sidebar shows a list of assets, with '자산검정' (Asset Verification) selected. The bottom right corner shows the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logo.

38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 회계실체의 특성상 주요업무와 관련된 경우 원가 재배분 필요
- 외화관리가 주요업무일 경우(외화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 행복청에서 세종시 교육청에 물품양여(정부외자산기부)

39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7.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3. 결산조정분개 관련 프로그램별 배분이 필요한 경우

- 대손충당금 설정 건별로 프로그램/단위사업 행을 추가하여 입력
- 대손상각비 관련 결산조정 시 원가배분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

40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8.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1	6	3	5	20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회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에 지급이 결정된 명예퇴직금에 대한 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2억 4,267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급여(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8.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1	6	3	5	20

▶ 발생원인 :

1.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 미흡
 -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관련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 dBrain시스템상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결산조정으로만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여 누락하는 경우에 비용과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오류 발생

8.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참고

- 과거 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에 비용 및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
- (주요사례) 유류비, 사회보험비용, 임대료, 급여, 퇴직금, 진단서발급비용, 이차보전비용, 징수수수료, 수입보장금액, 연구개발비, 누적보험운영손실 등

4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8.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실제 대금 지급한 건에 대한 자료 검토

- 업무담당자로부터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까지 실제 대금을 지급한 건에 대한 자료를 수령하여,
- 지출항목의 성격상 회계연도말 시점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내역이 있는지 확인
- 해당기간 중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건은 회계연도 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4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8.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오류가 발견된 건에 대해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 수행
 - 이전 단계를 통해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반영

9.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2	5	4	5	2	18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회 일반회계에서 회계연도말 현재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 환급이 결정된 과징금액은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누락되어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11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기타비용(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9.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2	5	4	5	2	18

➤ 발생원인 :

1.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 미비
 - 설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2. 소송충당부채 설정 대상 건의 누락
 - 기말시점으로 소송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3. 기인식한 소송충당부채 미고려
 - 소송비용 지급시 또는 추가 소송충당부채 설정 시 주의 필요

9.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소송충당부채 설정여부 확인
 -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건이 있는지 소송전담부서에 확인
 2. 전기 소송충당부채와 비교 대사
 - 소송전담부서 수령 자료와 전기 재무제표 및 주석 내용 비교
- 주요 변동 사항을 확인
(전기보고서 주석 vs 당기보고서 주석 중 전기내역은 일치해야 함)

9.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각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 인정(단, 합리적 근거 필요)
 - 예: 2심 패소 건에 대해서는 소송충당부채 설정 등
2. 소송자료의 정확성 확인 및 설정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
 - 소송의 진행현황 등 파악 가능(담당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 문서화된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소송충당부채 산정

9.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3.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 고려
 - 소송비용 지급 시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 상계 고려
 -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설정 시 전기말 잔액 고려하여 추가분만 설정

〈예시: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1,000, 소송패소지급액 500(전기말 충당부채 설정 건),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2,000〉

분개시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중 소송패소금액 지급 시	수입금반환 (배상금 지급)	과징금수익환급금 (배상비)	500	국고수입	500
연도말 계정대체	결산조정	소송충당부채	500	과징금수익환급금 (배상비)	500
연도말 소송충당부채 설정	결산조정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1,500	소송충당부채	1,500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5	2	4	2	18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처 일반회계에서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관련 선급금(유동자산)을 토지의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토지(일반유형자산)로 본계정 대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선급금이 86억 8,406만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토지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5	2	4	2	18

➤ 발생원인 :

1. 선급금에 대한 검사절차 누락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5	2	4	2	18

발생원인

2. 준공(완공)확인

53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5	2	4	2	18

발생원인 :

3.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시 업무처리 누락

구분	차 변	대 변
민간대행사업비 (320-08)지출	선급금 100,000,000	현금 100,000,000
기타증감_외부예의 한 기반시설취득	구축물 100,000,000	선급금 100,000,000

54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를 검토하여 선급금이 있는 경우
 -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건이 아닌지 검토
 -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으로 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더욱 주의 필요

5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추가적인 검사를 통한 선급금 정산

- 재산관리관이 검사요청을 누락하였거나 검사금액을 적게 입력한 경우
- [조달(계약) > 검사 > 검사등록 > dBrain검사등록] 메뉴에서 추가적인 검사로 선급금을 정산하고 검수를 통해 자산 등재
- 이때 검사금액에 청산하려는 선급금을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이 '0'원이 되도록 조치

(참고) 지출결정금액이란 금회준공금액(검사금액)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선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한 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의미함

5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급금 정산

- 재산관리관이 준공검사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조달(계약) > 검사 > 검사조서현황 >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조회하여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해 오류 수정
- '선금 미청산 잔액'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 수정

57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급금 정산

• [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에서 선금청산 금액정정 대상을 조회한다.
 • 정정대상을 선택 후 '선금청산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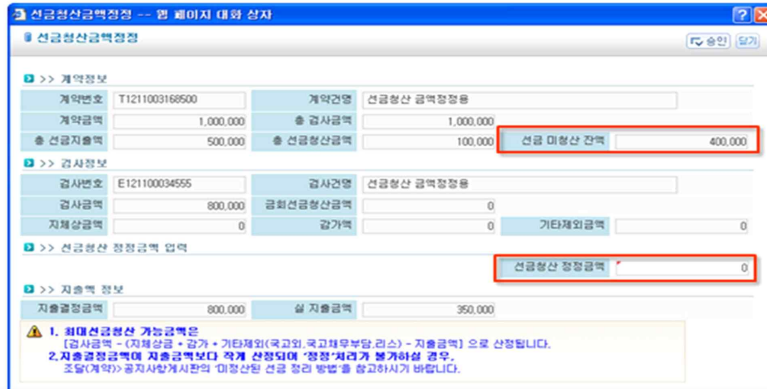
58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급금 정산



- 선금 미청산 잔액의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한다.
-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정정을 완료한다.
 - 선금청산 정정금액은 [총 선금지출액, 검사금액, 선금 미청산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금청산 정정에 의한 지출결정금액은 실제지출금액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0. 자산 취득 시점에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3. 취득이 완료된 자본형성적 경비 관련 선급금 정산

-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 중 취득이 완료된 건인 경우
-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을 통해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

<TIP>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오(誤)입력하는 등 선급금이 청산되지 않았지만, 국유재산대장 마감, 업무담당자 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선금청산금액정정'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미지급금/대) 선급금의 분개를 입력하여 선급금을 제거하는 경우 재무제표 오류는 수정되지만 dBrain상의 선금미청산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검수업무를 재수행하거나, '선금청산금액정정'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3	2	3	4	17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회 일반회계에서 준공이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은 자산등재 대상인데도 이를 누락하여 건물(일반유형자산)과 구축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1,107억 8,757만원, 59억 7,994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1,167억 6,751만원 과대계상 되었다.

6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3	2	3	4	17

▶ 발생원인 :

1. 업무 미숙으로 자산 등재 누락

-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자산대체서 승인)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아 자산 등재가 누락되어 오류 발생

6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5	3	2	3	4	17

➤ 발생원인 :

2. 자산 등재 시 건설중인자산 미상계

- 자산을 등재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여야 하나,
-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자산만 직접 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하여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 발생

63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는 재무장부에서 건설중인자산의 상세내역을 확보
 - 확보한 목록에서 자산취득 여부, 취득 완료 예정일 등을
업무담당자에게 확인

64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활용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계약 사용자 알람' (Contract User Alarm). It display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계약번호	계약일자	종류해결일자	알람설정	알람시작일자	알람종료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1	T151004689500	2015-11-20	ON	2015-11-25	2015-11-27	20151120_국유재산 자산합산	1,000.00
2	T151004689500	2015-11-20	ON	2015-11-25	2015-11-27	20151120_국유재산 자산합산	700.00
3	T151004689500	2015-11-23	ON	2015-11-25	2015-11-27	20151120_국유재산 자산합산	1,000.00
4	T151004689500	2015-10-30	ON	2015-11-26	2015-11-26	계약검수금액TEST	10

Below the table, there is an '알람내용' (Alarm Content) section with the following text:

계약번호: T151004689500 계약검수금액TEST
 해당 계약 견제 대한 알람을 하루동안 설정하였습니다.
 알람 11월 26일 설정 TEST

65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 업무담당자가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조달메뉴에서 미대체검수대상조회 조회 후에 대체서 승인으로 처리
- 미대체검수대상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 등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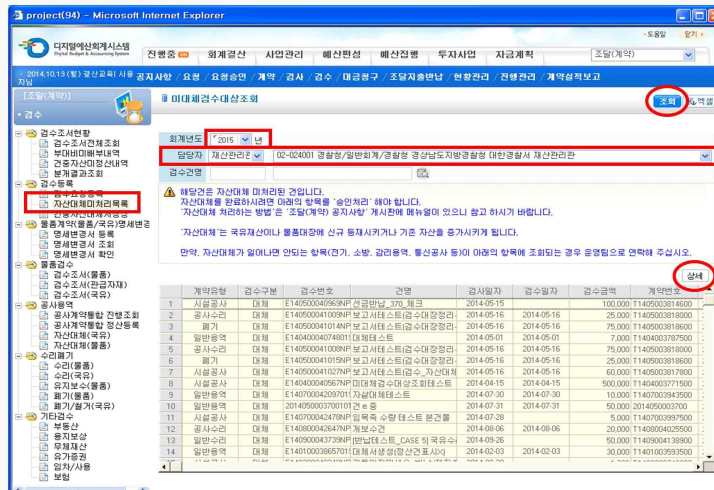
66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본공사가 완공되어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었으나 재산관리관이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아 자산대체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화면에서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서를 승인 또는 삭제 해야 함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미상계된 건설중인자산 제거

- 당기에 직접 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기타증감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 및 '삭제'를 통해 취소하고,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 전기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는 결산조정분개 수행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정리요청서를 통해 검사(또는 선금, 부대비) 미정산내역으로 조회되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함

11. 취득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미상계된 건설중인자산 제거

<TIP>



정리요청서는 조달에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내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제거되는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증감으로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대장에 반영하는 경우에 결산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제거하고, 업무담당자는 관련 조달 내역만 제거하는 것이다.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3	2	1	3	12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회 일반회계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감자로 인해 보유 유가증권의 지분율이 0%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64억 6,512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3	2	1	3	12

▶ 발생원인 :

1. 투자증권 감액사유 발생여부 미고려(공정가액평가 미대상)
 - 투자증권의 감액은 국유재산담당자가 [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별>조정자료입력] 메뉴에서 수행하는데,
 - 업무담당자가 매년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3	2	1	3	12

▶ 발생원인 :

2. 투자증권 감액사유 발생여부 미고려(공정가액평가 대상)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
 - 투자목적(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 조회를 통해 출자금, 주식 등의 장기투자증권 및 투자회원권(투자회원권의 경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매매가 조회를 통해 감액 요인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등 기타투자자산을 확인
 - 기말시점 감액손실 발생여부검토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실이 계상되어있는지 검토

7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매 회계연도 말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 검토
 - 감액손실인식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국유재산담당자에게 휴·폐업,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자본잠식 등 공정가액 하락 등의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문서화
 - ① 휴·폐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 조회
 - ②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 인터넷을 통해 최근 기사를 검색하여 파산여부 확인

7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매 회계연도 말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 검토

- ③ 자본잠식 : 정상적인 회사라면 자본=자본금+잉여금의 기본구조를 보이지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던지 결손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으로 적자를 상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하며 (자본금이 모두 상쇄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완전자본잠식), 결산담당자는 피투자회사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자본잠식 상태라면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평가손실이 큰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여부 검토

- 순자산변동표 조회를 통해 '투자증권평가손실' 금액을 확인하여 금액이 유의적으로 크다면,
- 평가손실이 아닌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결과를 문서화

7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감액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였거나, 감액손실이 아닌 평가손실로 계상된 내역이 있다면

-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국유재산 마감 절차를 통해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해야 함

77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2.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TIP>

1. 직전 감액한 상장주식 중 당기의 시가 하락분에 대한 추가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여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투자증권감액손실(비배분비용)을 과소 계상하였다는 감사원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 ①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감액손실환입(감액사유 발생 전 장부가액을 한도)을 인식하여야 하며 ② 추가로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추가로 계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지적을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 회수가능성이 회복되거나 혹은 추가로 감액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에 조정 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빼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7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1	1	2	4	3	12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2013년 및 2014년에 전산자원 도입사업을 통해 취득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짧게 적용(5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및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6억 9,405만 원, 10억 6,088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3억 6,683만원 과소계상 되었다.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11~'15 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1	1	2	4	3	12

➢ 발생원인 :

1. 내용연수 입력 오류
 - 내용연수를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로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
2. 잔존가액 입력 오류
 - 대장에 감가상각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잔존가액에 취득가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 수행
 - 당해연도 취득한 자산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통해 감가상각비율을 구하고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율과 비교
 -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의 확인이 필요

8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2.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기준내용연수와 일치하는지,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이 동일한 자산은 없는지 검토
 - 무형자산은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관련 계약서나 협약서 등과 비교 검토하여 내용연수 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게 함
 - 무형자산은 실체가 있는 일반유형자산에 비해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사용권의 권리기간 등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8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내용연수 정정

-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함
-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연수 증가'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83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3.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2. 잔존가액 정정

-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함
-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기타정보' 하단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변경된 잔존가액을 입력·저장하면 수정할 수 있음

<TIP>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37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2. 투자자산(회원권)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등재하여 감가상각비가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4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금융상품의 분류

회계연도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4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정기예금 중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하이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정기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이 331억원 과대 계상 되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8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는 각 금융상품별로 관리정보항목(취득일, 만기일) 점검을 통해 금융상품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처 내에 관련 상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수행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업무담당자에게 수정요청(업무 재수행)
 - 업무담당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수정

8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무형자산 인식

회계연도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2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기 구축된 번역 데이터베이스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발생하는 신조어 업데이트 용역비는 수익적지출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과 2013년에 위 지출 금액을 내부개발소프트웨어(자산)로 회계처리하여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4억 8,519만원, 2억 1,010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 (비배분비용)이 6억 9,529만원 과소계상 되었다.

87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수정전시산표 검토, 당기 중 무형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는지 확인
 - 당기 중 증가한 내역들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
 -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일관성 없이 자산 또는 비용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업무담당자에게 수정요청(발생유형 변경)
 - 업무담당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수정

8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무형자산 인식

회계일자	전표번호	단위업무	차변금액	대변금액
1	34	R2015120351100000091533	300,000,000	0
2	35	R2015120351100000091535	323,450,000	0
3	36	R2015120351100000091537	5,487,760	0
4	37	R2015120351100000091538	8,926,730	0
5	38	R2015120351100000091544	7,910,000	0
6	39	R2015120351100000091541	7,363,860	0
7	40	R2015120351100000091544	24,510,000	0
8	41	R2015120351100000091545	1,551,840	0
9	42	R2015120351100000091546	672,128,000	0
10	43	R2015120351100000091549	3,576,950,000	0
11	44	R2015120351100000091550	182,520,000	0
12	45	R2015120351100000091551	678,770	0
13	46	R2015120351100000091552	665,700,000	0
14	47	R2015120351100000091553	11,125,000	0
15	48	R2015120351100000091554	37,695,930	0
16	49	R2015120351100000091555	0	700,703,190
합계	11000	일반회계		

89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사용수익권 인식

회계연도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1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 XX특별회계에서 취득 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 건물 등을 사용수익권(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잘못 인식하여 건물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구축물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40억 1,380만원, 72억 5,857만원 과대계상 되었고, 관련 사용수익권 상각으로 인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및이전)이 26억 250만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86억 6,987만원 과소계상 되었다.

90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수정전시산표 검토시 당기 중 사용수익권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
 - 업무담당자에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부 또는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 거래상대방이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확인
 - 거래상대방과 상각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업무담당자에게 수정요청(사용수익권 입력금액 삭제)
 - 업무담당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수정

9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회계연도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 건수	3

➤ 2015년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 예시 :

OO부 XX기금에서 2015년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지출한 사업비 중 2016년초 환수할 예정인 미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미수채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기타의미수금(유동자산)이 8억 3,800만원 과소계상 되고, 기타민간보조비(비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

9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5회계연도 신규 유형의 감사원 지적사항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1.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1. 결산담당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재무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 과거 회계연도의 감사원 지적사항 중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을 참고

Step II.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1. 결산담당자가 직접 조치

-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발생주의 효과 반영

93

감사합니다.

94

